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의 거래편의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외국환중개업의 종류에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금융기관 등과 이에 속하지 않는 자 간의 외국통화 매매 등을 중개하는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20781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외국환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고객외국환중개업자에게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29. ~ 7.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업소”를 “본점 및 국내영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자본금이 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를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로, “자본금을”을 “자본금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본금”을 “자본금등”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 가. 납입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의 영업 기금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4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 원 이상일 것
 - 나.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 다.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 라.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이하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 가. 납입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일 것
 -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호 따른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않는 자 전부를 말한다.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제1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8항제1호”로, “보증금”을 “금액”으로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하는 것
2.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非)핵심업무를 외국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제35조제4항제1호가목 중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외국 금융기관”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자목의 해당 행위란 중 “거래한”을 “외국환거래업무를 한”으로, “보증금 예탁 명령을”을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환거래를”을 “외국환중개업무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 ·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 7. (생 략)</p> <p>8. <u>외국 금융기관</u>(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p>	<p>제7조(금융회사등) -----</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외국금융기관</u>-----</p> <p>-----</p> <p>-----</p> <p>-----</p> <p>-----</p> <p>-----</p> <p>-----</p>
<p>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생 략)</p> <p>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p> <p>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u>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u></p>	<p>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가. -----</p> <p>----- <u>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u></p>

<p>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u>외국 금융기관</u>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p>	<p>지----- ----- ----- <u>외국금융기관</u>----- ----- -----</p>
<p>나.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u>외국 금융기관</u>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p>	<p>나. ----- ----- ----- ----- ----- ----- ----- ----- ----- ----- ----- ----- <u>외국금융기관</u> ----- -----</p>
<p>다.·라. (생략)</p>	<p>다.·라. (현행과 같음)</p>
<p>③ ~ ⑨ (생략)</p>	<p>③ ~ ⑨ (현행과 같음)</p>
<p>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u>법 제9조제1항</u>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p>	<p>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u>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u>----- ----- ----- ----- ----- ----- -----</p>

<p>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 -----.</p>
<p>1. (생략) 2. <u>영업소의 소재지</u></p>	<p>1. (현행과 같음) 2. <u>본점 및 국내영업소</u>----- -----</p>
<p>3. · 4. (생략)</p>	<p>3. · 4. (현행과 같음)</p>
<p><u>②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u>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u></p>
<p>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p>	<p>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p>
<p>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p>	<p>가. 납입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의 영업기금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일 것</p>
<p>3.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 · 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p>	<p>나.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p>
<p>4.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p>	

지 아니할 것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다.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경험 등 업무 수행
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
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라.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
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
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이하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라 한
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납입자본금이 30억 원 이
상일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의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호
따른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신 설>

않는 자 전부를 말한다.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 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 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
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
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
관인 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
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
가를 받은 후 자본금이 제2항제
1호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
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
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
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

④ -----

----- 자본금 또는 영업
기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등”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가
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

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 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⑤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

-- 자본금등을 -----
-----. ----- 자본금등 -----

-----.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

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⑨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8항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1. · 2. (생략)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
무의 인가)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5항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 3. (생 략)

〈설설〉

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범
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등에 예탁하
게 하는 것

2.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

⑨ _____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증개업
무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非)핵심업무를 외국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① 외국환중개회사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5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하는 방법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가목(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및 마목의 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그 관계의

나, ~ 마, (생 략)

2. · 3. (생략)

⑤ ~ ⑯ (생략)

제37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환업무취급기관(외국 금융기 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가. ----- 외
국국 육기 관-----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37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외국금융기관

<p>서 같다) 및 기타전문외국환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 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p> <p>2. ~ 8. (생략)</p> <p>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 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 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환업무취급기관(<u>외국 금융기</u> <u>관으로</u> 한정한다)에 대한 감 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p> <p>2. ~ 13. (생략)</p> <p>④ ~ ⑦ (생략)</p>	<p>----- ----- ----- ----- ----- 2. ~ 8.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 <u>외국금융기관</u> ----- ----- 2. ~ 1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연 락 처	(044) 215 - 4731